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박상아 [6575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1699호

시행일자 2026. 5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6년 4월)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심사평가조정부-930(2026. 4. 29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(총 10항목, 195사례) *2026. 4. 30. 공개

1.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(16사례)

2.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(107사례)

3.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6사례)

4.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 (품명: 에브리스디 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여부(37사례)

5.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졸겐스마주) 성과평가(8사례)

6. 위식도 역류질환, 위궤양,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(다) 유전성 유전자검사-염기서열분석 [CYP2C19] 요양급여 인정여부(6사례)

7.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(8사례)

8. 소아 잠복음경에 실시한 음경성형술 급여 인정여부(3사례)

9. 장폐색증 수술시 장폐색증수술(자269)과 소장절제술(자265) 동시 청구 시 인정여부(2사례)

10.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(자235)과 식도분문수술(자242-1)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(2사례)
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심사기준 → 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

○ 의협 홈페이지(https://www.kma.org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

#붙임 : 2026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